

● 중소기업부 공고제2024-341호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31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345호, 2024. 2. 20. 공포, 8. 21. 시행예정)됨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의 업무 중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관련 신청, 심사 등의 업무 일부를 ‘중소기업제품·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’에 위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

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질병관리청,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이 타 국가행정기관 등과 동일하게 판로지원법에 따른 공공구매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하며,

법령 체계상 일부 불완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업무 위탁(안 제27조)

- 1) 성능인증 신청, 심사, 인증 비용 징수, 성능인증 취소를 위한 자료요구, 재교부 신청에 따른 검사 등 성능인증 업무 일부를 유통센터에 위탁

나.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공구매계획 등 통보대상 확대(안 제3조)

- 2) 질병관리청,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타 국가행정기관과 동일하게 공공구매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

다. 법령 체계상 불완전한 조문을 정비(안 제8조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, 중소벤처기업부
- 전자우편 : cho641@korea.kr
- 팩스 : 044-204-7549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관로정책과(전화 (044) 204 - 7545, 팩스 044-204-754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